

#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

1994년 12월 31일

## 제1장 총 칙

제 1조(목적)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(이하 "이회계"라 한다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용어의 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자"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(이하 "관련사업자"라 한다)를 말한다.
2. "회계운용부서"라 함은 이 회계의 운용·관리를 총괄하는 통상산업부 소관부서를 말한다.
3. "사업담당부서"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통상산업부 소관부서를 말한다.

제 3조(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) ① 이 회계의 예산편성·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, 공고,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
③ 각 사업담당부서가 이 회계의 세입·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법 및 영에 따라 회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, 용자대상기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, 용자금의 대출

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2장 회계관계 직원의 임명 등

제 4조(회계관계 직원) ① 이 회계의 운용·관리를 위한 예산회계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은 "별표 1"과 같으며,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.

③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세입징수관·재무관·지출관·계약관·출납공무원 기타 회계직 공무원과 예산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 및 분임회계직 공무원 현황을 회계년도말 현재로 회계직별로 구분·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조(회계관계 직원의 임무) ① 회계관계 직원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·기록 및 자료의 제출·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통상산업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

제 6조(사업계획의 수립) ① 관련사업자가 이 회계예산의

지원을 수반하는 중·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,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사업규모,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.

② 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) ① 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예산의 배정)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·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·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.

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수입 및 지출

제9조(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) ①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재정경제원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납 절차) ① 분임세입징수관은 소관세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 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로 주임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분임세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분임세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세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1조(환급금의 지급) ① 부과금의 환급은 이 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, 환급금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.

② 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,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지출 절차)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지출을 수행한다.

#### 제5장 용 자

제13조(용자약정 및 용자절차) ① 용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용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용자약정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용자약정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용자약정서에 의한다.

③ 용자대상기관의 장이 용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용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용자금의 처리 및 관리) ① 용자대상기관의 장은 용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용자대상기관은 용자금을 용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

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제 15조(용자기간 등) ① 용자기관은 용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.

② 용자대상기관의 장은 이 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다만,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,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용자금 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

제 16조(용자금의 원리금 상환) ① 용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.

②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, 6월, 9월, 12월의 각 15일로 하되, 최초의 상환일은 용자금의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.

③ 용자대상기관이 용자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④ 용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, 이자,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.

⑤ 용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.

⑥ 통상산업부장관은 용자대상기관이 실수요자에게 대출한 후 회수한 용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⑦ 석유개발사업의 용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7조(용자금의 이자계산) 용자금의 이자는 용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.

제 18조(용자조건 등) ① 용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용자기

간 등은 “별표 2”와 같다.

② 용자대상기관에 대한 용자취급수수료는 용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,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용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.

다만, 용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와 성공불용자사업과 같이 용자원리금 감면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용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19조(제재)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용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용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용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, 그 용자금 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제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용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.

## 제6장 유가원충자금의 운용

제 20조(유가원충사유) ① 국내 석유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가원충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로 한다.

1. 국내 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
2. 기타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명령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

②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유가원충금액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다.

제 21조(유가원충자금의 사용절차)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원충 자금으로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원충자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유가원충준비금(이하 “준비금”이라 한다)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22조(준비금의 운용등) ① 준비금은 은행법 제3조의 규

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 대한 대출 실적등을 고려하여 예치·운영한다.

②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은 준비금을 예치한 금융기관, 예치금액, 예금의 종류 등 준비금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7장 결산 및 보고

제 23조(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) ①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이 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,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20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등을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4조(보고)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

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·관리 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용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, 기타 이 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·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  
제 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중전의 대출이자율 및 대출기간에 따른다. 다만, 장거리송유관 건설사업의 경우는 이 고시에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용자이자율 및 용자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의한다.

### 용 자 조 건

[별표 2]

(단위: %, 년)

사 업 명	이자율 (용자/대출)	기간(거치/상환)	용자비율(%)
국내외유전개발	4.0/5.0	5/5 (탐사: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내)	100% 이내
해외자원개발	4.0/5.0	5/10	80% 이내
석유탐사선건설	4.5/5.0	5/10	100% 이내
에너지기술개발	4.0/5.0	3/5	"
석탄광개발	4.0/5.0	3/5	80% 이내
LNG공급기반구축	6.5/7.0	5/10	"
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	6.0/7.0	5/10	"
에너지절약시설설치	4.0/5.0	3/5	100% 이내
주택단열개수	6.0/7.0	3/5	"
집단에너지공급(지역난방)	6.5/7.0	5/5	90% 이내
집단에너지공급(공업단지열병합)	6.0/7.0	5/5	"
대체에너지보급	4.0/5.0	3/5(소수력 5/10)	"
장거리송유관건설	6.5/7.0	5/10	80% 이내
LPG수입기지건설	8.5/9.0	5/10	"
농어촌전화	6.5/7.0	5/30	100% 이내
석재자금	6.0/7.0	3/5	80% 이내
하계저탄	0.0/0.0	8개월 일시상환	100% 이내
연탄공장시설	4.0/5.0	3/5	80% 이내